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제5907호)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에 포함된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II. 검토의견

- 안 제7조제4항은 「군인복지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으로 민간 노동시장의 비교집단 보수와 군인의 보수를 비교하는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7조(보급) ① ·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7조(보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④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u>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에 포함된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u>

-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역 관련 법령에서 “보수”는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을 뜻하는 반면 “복지”는 노동의 대가는 아니지만 직업을 향유함으로써 누리는 혜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여, 두 용어를 구별하고 있음¹⁾.

1)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군인보수법」과 「군인복지기본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a) 「군인보수법」과 「군인복지기본법」이 목적을 달리하여 각각
 제정되어 있고²⁾, 구체적으로 (b) 「군인보수법」은 주로 보수·수당·
 연금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반면 「군인복지기본법」은 주로
 주택·보육·복지시설 등 군인 보수와 무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³⁾
 (c) 양 법은 서로 법률의 수범자가 상이하고⁴⁾, (d) 법률의 집행
 재원⁵⁾이 상이함.

따라서 법률의 체계와 사안의 포섭 관계가 혼재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와 “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를 「군인복지기본법」 제7조의
 실태조사⁶⁾의 조사 항목으로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인복지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⁷⁾에 반영하게 되면,

2) 「군인보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군인보수법」 제3조(보수 지급의 방법), 제4조(보수의 계산 등),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제13조(가족수당), 제18조(여비의 지급), 제21조(전역·퇴역·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제14조(군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16조(노후설계 교육), 제17조(군인가족의 날)

4) 「군인보수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5) 「군인복지기본법」 제5조(복지사업의 재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

6) 「군인복지기본법」 제7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군인 보수가 민간의 평균보다 낮으므로 군인 보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데, 이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다만, 궁극적으로 군인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수와 복지를 같이 상향할 필요가 있고,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조사 결과를 복지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두 분야는 서로 연관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군인보수법」에 따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 자료를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 제7조제4항에서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를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실태조사가 아니라 「군인보수법」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해당 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7조(봉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u>군인복지기본법</u>」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u>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에 포함된 <u>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u> 부칙 제2조(군인 보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u>따른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는 이 법 시행 이후 국방부장관이 최초로 실시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u>	제7조(봉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u>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u>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부칙 제2조(군인 보수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u>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한다.</u>

- 기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김 성 완)